



우정사업본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2017년도 우정사업본부 세출예산 집행지침 시행

1. 관련

가.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제80조

나.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)

2. 「2017년도 우정사업본부 세출예산 집행지침」을 수립하여 알려드리니 각 사업단 및 소속 기관에서는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2017년도 정부지침 주요 개정내용

- (연구용역비 이월 방지)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 발주 지양
 - (업무추진비 절감) 예산의 95% 이내에서 절감 집행
 - (세입재원 없는 이월 금지) 이월금 제외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계약
 - (집행현장조사제) 재정집행 현장조사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또는 제도개선에 반영
 - (정보화 사업) 전문기관 사전 검토를 통한 정보화전략계획(ISP) 내실화 추진
 - (일반수용비) 정책 홍보대사는 무보수 또는 실비 보상 사례금만 지급
 - (유류비)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 이용 가능
 - (특수활동비) 집행절차·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수립
 - (업무추진비) 정보공개법에 따라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표
 - (세출 비목 개편) 상용임금, 유류비, 용역비, 연구비, 건설보상비, 공사비 등
- ※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이행할 사항은 붙임1.의 참고자료에 명시

나. 「2017년도 우정사업본부 세출예산 집행지침」 주요 개정사항

- ① (일반수용비) 내부 직원용 기념품 지급 불가 원칙 삭제(목적에 맞게 최소한 구매), 상품권 다량 구입 등 예산 현금화는 불가하나 선장품 구매 목적 경품 성격은 예외 (Gift Card, 모바일쿠폰, 캐시백포인트, 종이상품권 등)
- ② (일반용역비) 행사 위탁 시 의무적 제한업종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획
- ③ (기타운영비) 과운영비 경리부 작성 의무 삭제(최소 행정단위 소규모 경비이고 예산 지출 후 공금사용이므로 예산집행지침에 수록 불필요)
- ④ (포상금) 예산의 직접 지출(→업체) 금지, 포상을 원인행위로 관서 및 개인에게 지출 준수, 수상금은 각 사업별 세부지침에 따라 사용

다. 「우정사업본부 세출예산 집행지침」 책자 편집 방향

- o 기획재정부 내용을 기본으로 수록하되, 우정사업본부 자체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은 별도로 박스표기

※ 전년 대비 개정사항과 우정사업본부 자체 규정은 붙임화일에 파란색으로 표기

- 붙임 1. 2017년도 우정사업본부 세출예산 집행지침 개정내용(요약) 1부.
2. 「2017년도 우정사업본부 세출예산 집행지침」 1부. 끝.

우정사업본부장



수신자 우편사업단장, 예금사업단장, 보험사업단장, 감사담당관, 준법감시담당관, 운영지원과장, 경영총괄담당관, 홍보협력담당관, 경영성과정보담당관, 노사협력담당관, 직/청/우노/공노

주무관	김대주	행정사무관	손용광	재정기획담당관	정현철	경영기획실장	이병철
본부장	01/26 김기덕						
협조자							

시행 재정기획담당관-294 (2017.01.26.) 접수 ()

☎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(어진동) / www.koreapost.go.kr
전화 [044-200-8132](tel:044-200-8132) /전송 044-200-8091 / binzip@korea.kr / 공개